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보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571호 2021. 1. 1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호 도시관리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9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0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323호선, 소로1-324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1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2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 2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3호 2021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 2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4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 2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9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8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정책과 [032-560-4146]**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0호 인천광역시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3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4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7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 5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9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6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0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66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 - 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4블록 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4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유승종합건설(대표자: 민광옥)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4블록
   나. 대지면적 : 57,122㎡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54,591.8211㎡ (지하3층, 지상25층)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938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마. 사 업 비 : 346,520,492천원

4. 사업기간 : 2018. 10. 19. ~ 2021. 09. 18.

5. 변경사항 :

- 실외 주민운동시설 추가 및 조경면적(식재 수량 등) 변경
- 주출입구 차량출입 경사로 구배 조정, 외부계단 레벨 조정
- 주동 자동문 개폐방향 및 주출입구 계단 및 경사로 길이 변경
- 단위세대 발코니 수전 위치 변경 및 배수구 추가
- 지하주차장 회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유형 변경
- 어린이집 실배치 및 유아놀이터 위치 변경
- 근린생활시설-2, 경비실1,2 집수정 신설, 근린생활시설-2 천장고 변경
- 지하주차장 일체형 방화셔터 내방화문 삭제 및 별도 방화문 설치
- 우수 유역변경 및 관저고 변경, 우수 라인 삭제 및 횡단측구 추가
- 문주 입면 변경, 조경석 길이 및 높이 변경, 추가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소담2로 26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1.1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고시일 : 2021-1-11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406번길 29 (가정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406번길 27 (가정동)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1-1-1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2로 26 (금곡동)	20191223	소담로에서 두 번째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13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81번길 29 (오류동)	20200720	반월로 시점에서 810미터 지점에서 분기한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1-1-11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 17 (석남동)	철거	20090922	밤염 밤섬 율도로 들어가는 길이므로 율도로라고 명명	
2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95번길 58 (석남동)	철거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15번길 6 (석남동)	철거	20090922	율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15번길 4 (석남동)	철거	20090922	율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15번길 2 (석남동)	철거	20090922	율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15번길 2-1 (석남동)	철거	20090922	율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4호

도시관리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완충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1.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2-1공구 종합환경연구단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수도권매립지 2-1공구 종합환경연구단지	32,194	증) 822	33,01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4-16호 (2004.1.26)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변경사유
1-1	녹지	◦ 면적 변경 - A = 32,194㎡→33,016㎡ 증) 822㎡ ◦ 폭원 변경 - B = 40m → 45m 증) 5m	◦ 수도권매립지 2-1공구 종합환경연구단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국립생물자원관 및 생물안전연구동 건설에 따른 진출입로 설치)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완충녹지의 일부 축소 및 폭원 확장

4. 지형도면: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9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61호(2017.7.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명: 중로3-90호선, 사업명: 불로동 3-90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변경사유
○ 공사기간 연장 및 후속 행정처리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520-13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90호선)
○ 명칭 : 불로동 중로3-90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비고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중로	3	90	12~15	12	435	292	143	-	
도로	중로	2	174	15	15	312	-	16	296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907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 인가일 ~ 2020. 12. 31.

○ 변경 : 2018. 9. 10. ~ 2021. 6. 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90	12	집산도로	143	대3-58	중2-174	일반도로	-	1999.6.23.	-
신설	중로	2	174	15	집산도로	16	소2-28	소2-2	일반도로	-	2017.7.3.	-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불로동	841	도	2,346.9	775.0	인천광역시 서구					
2	불로동	823	공	14.8	14.8	인천광역시 서구					
3	불로동	520-14	구	265.0	265.0	농림축산식품부					
4	불로동	822	공	1.6	1.6	인천광역시 서구					
5	불로동	520-13	구	306.0	306.0	농림축산식품부					
6	불로동	414-3	도	144.0	5.0	김*식	고양시 일산구 *** 2132-9 2층				
7	불로동	414-2	도	16.0	7.0	김*식	고양시 일산구 *** 2132-9 2층				
8	불로동	736-14	도	64.0	11.0	국토교통부					
9	불로동	413-2	도	33.0	3.0	김*식	고양시 일산구 *** 2132-9 2층				
10	불로동	520-5	구	3,766.0	794.0	농림축산식품부					
11	불로동	736-13	도	724.0	8.0	국토교통부					
12	불로동	805	도	1,780.0	63.0	인천광역시 서구					
13	불로동	64-3	전	310.0	32.0	김*자	서구 *** 408				
						문*모	서울 노원구 *** 624 주공아파트 1511-803				
						문*모	김포시 *** 663 호수빌딩 3층 301호				
						문*모	서구 *** 324-9 백두아파트 1007호				
						문*모	서구 *** 408				

<지 장 물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전주번호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불로동	841	도	한전주	8629S 604 불로지 72 L1	1	한국전력공사		
2	불로동	520-14	구	한전주	8629S 501 불로지 72 L2	1	한국전력공사		
3	불로동	520-13	구	한전주	8629S 513 불로지 72 L3	1	한국전력공사		
4	불로동	520-13	구	한전주	8629S 514 불로지 72 L4	1	한국전력공사		
5	불로동	520-13	구	한전주	8629S 422 불로지 72 L5	1	한국전력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323호선, 소로1-324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64호(2020.04.0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명: 소로1-323호선, 소로1-324호선, 사업명: 석남동 소로 1-323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변경사유
○ 지적분할에 따른 토지조서 변경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03-18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323호선, 소로1-324호선)
○ 명칭
- 당초 : 도시계획시설(소로1-323호선 외 1개노선)개설공사

- 변경 : 석남동 소로1-323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 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비고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소로	1	323	10	10	54	-	54	-	
도로	소로	1	324	10~12	10~12	129	-	129	-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석남동 소로1-323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연번		토지소재지 읍면리동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또는명칭	관계인 주소	관계인 권리의종류 및내용
기정		계			15,551	2,010					
변경					2,020	2,020					
1	기정	석남동	203-3	도	355	31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석남동	203-18	도	32	32	인천광역시 서구				
2	기정	석남동	433-3	구	685	262	국(국토교통부)				
	변경	석남동	433-24	구	81	81	국(국토교통부)				
	변경	석남동	433-22	구	190	190	국(국토교통부)				
3	기정	석남동	202-12	대	234	18	한*복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번길 **(석남동)	인천항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51	근저당권자
									삼정펄프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0	
	변경	석남동	202-14	대	18	18	한*복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번길 **(석남동)	인천항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51	근저당권자
									삼정펄프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0	
4	기정	석남동	203-12	임	1,174	440	**인천석유화학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원창동)			
	변경	석남동	203-17	임	440	440	안*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대로** ***동****호 (만수동,**아파트)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읍면 리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기정	석남동	203-13	임	10,841	340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석남동	203-21	임	317	31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03-20	임	6	6	인천광역시 서구				
6	기정	석남동	201-6	전	642	245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석남동	201-9	전	245	245	인천광역시 서구				
7	기정	석남동	433-20	구	425	223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석남동	433-26	구	254	254	인천광역시 서구				
8	기정	석남동	201	전	863	339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석남동	201-7	전	339	339	인천광역시 서구				
9	기정	석남동	산117-12	임	232	91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석남동	199-209	임	92	92	인천광역시 서구				
10	기정	석남동	433-21	구	34	9	국(기획재정부)				
		석남동	산117-23	임	66	12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석남동	203-19	임	6	6	인천광역시 서구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소로1-323호선 외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연번		토지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당초	석남동	203-3	차단기	-	1개		** 그랑시아				
	변경	석남동	203-18									
2	당초	석남동	203-12	가건물	목조	7.9㎡						
	변경	석남동	203-17									
3	당초	석남동	203-12	휀스	메쉬휀스	16m						
	변경	석남동	203-17									
4	당초	석남동	202-12	울타리	능망형	13.6m						
	변경	석남동	202-14									
5	당초	석남동	202-12	건물	슬라브	70.8㎡		*윗상사				
	변경	석남동	202-12									
6	당초	석남동	203-12	망부석	-	1개						
	변경	석남동	203-17									
7	당초	석남동	203-12	휀스	메쉬휀스	16m						
	변경	석남동	203-17									
8	당초	석남동	203-13	가건물	목조	18.7㎡						
	변경	석남동	203-21									
9	당초	석남동	203-13	가건물	목조	6㎡						
	변경	석남동	203-21									
10	당초	석남동	203-13	가건물	천막	9.2㎡						
	변경	석남동	203-21									
11	당초	석남동	203-12	가건물	천막	12.8㎡						
	변경	석남동	203-17									
12	당초	석남동	203-13	가건물	컨테이너	1동						
	변경	석남동	203-19									
13	당초	석남동	433-21	가건물	컨테이너	1동						
	변경	석남동	433-26									

연번		토지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4	당초	석남동	산117-12	가건물	조립식판넬	59.1㎡						
	변경	석남동	199-20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21 - 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입법취지(개정이유)

○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상 미비점 개선

○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추가

○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도·감독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가정양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추가(안 제16조)

○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감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조항으로 정비(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가정보육과, 전화 032-560-4989, 팩스032-560-2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지침에 근거한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인천서구육아지원종합센터의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정양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으로 ‘장난감수리센터 및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조항 추가 **(안 제16조)**

○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감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조항으로 정비**(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지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2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2021-16 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4.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5. 장난감 수리센터 운영 및 관리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임직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3. (생 략) <신 설> <신 설>	제16조(기능) ----------. 1~3. (현행과 같음) 4.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5. 장난감수리센터 운영 및 관리
제1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임직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 - 22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와 19세 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 1. 11.

인천광역 시서구청장

[단위:명]

19세이상의 주민수		19세이상의 주민총수 ③ (①+②)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③×1/40)
내 국 인 (선거권없는자제외) ①	외 국 인 (영주권 취득후 3년 경과자) ②		
441,379	1,065	442,444	11,06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 - 23호

2021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투표법 제9조 4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제5조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명)

구 분	총 수	내국인수	외국인수 (영주자격자)	투표청구 주민수 (청구인수비율)	비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442,716	441,379	1,337	36,893(1/12)	

※ 내국인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외국인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

2021년 1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 - 24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구청장>

(단위:명)

동별	청구권자 총수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비 고
	계	19세이상주민	등록 외국인 (19세이상)			
계	442,444	441,379	1,065	66,367		
검암경서동	37,287	37,183	104		4,425	
연희동	35,907	35,833	74		4,425	
청라1동	23,576	23,525	51		3,537	
청라2동	36,297	36,250	47		4,425	
청라3동	22,208	22,175	33		3,332	
가정1동	23,175	23,126	49		3,477	
가정2동	5,959	5,953	6		894	
가정3동	8,700	8,679	21		1,305	
신현원창동	26,794	26,755	39		4,020	
석남1동	20,204	20,106	98		3,031	
석남2동	11,960	11,906	54		1,794	
석남3동	12,534	12,507	27		1,881	
가좌1동	10,929	10,858	71		1,640	
가좌2동	17,348	17,331	17		2,603	
가좌3동	14,799	14,773	26		2,220	
가좌4동	9,407	9,382	25		1,412	
검단동	27,367	27,258	109		4,106	
불로대곡동	18,386	18,362	24		2,758	
원당동	18,865	18,835	30		2,830	
당하동	22,494	22,409	85		3,375	
오류왕길동	20,088	20,029	59		3,014	
마전동	18,160	18,144	16		2,724	

※ 산정된 서명인 수 66,367명 이상의 서명을 받되, 8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구의원>

(단위:명)

구별	선거구별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수			서명인수	최소 서명인수
			계	19세이상주민	등록외국인		
서구	제1선거구	계	105,272	105,008	264	21,055	
		검단동	27,367	27,258	109		1,053
		불로대곡동	18,386	18,362	24		1,053
		원당동	18,865	18,835	30		1,053
		당하동	22,494	22,409	85		1,053
		마전동	18,160	18,144	16		1,053
서구	제2선거구	계	93,282	93,045	237	18,657	
		검암경서동	37,287	37,183	104		933
		연희동	35,907	35,833	74		933
		오류왕길동	20,088	20,029	59		933
서구	제3선거구	계	138,009	137,784	225	27,602	
		청라1동	23,576	23,525	51		1,381
		청라2동	36,297	36,250	47		1,381
		청라3동	22,208	22,175	33		1,381
		가정1동	23,175	23,126	49		1,381
		가정2동	5,959	5,953	6		1,192
		신현원창동	26,794	26,755	39		1,381
서구	제4선거구	계	105,881	105,542	339	21,177	
		가정3동	8,700	8,679	21		1,059
		석남1동	20,204	20,106	98		1,059
		석남2동	11,960	11,906	54		1,059
		석남3동	12,534	12,507	27		1,059
		가좌1동	10,929	10,858	71		1,059
		가좌2동	17,348	17,331	17		1,059
		가좌3동	14,799	14,773	26		1,059
		가좌4동	9,407	9,382	25		1,059

※ 각 선거구별로 산정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되, 선거구안에 3개이상의 동이 있는 경우 각 선거구별 1/3 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 - 39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2021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기준 변경
- 고등학생(공납금 기준)에서 대학생(정액 기준)으로 변경

○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성적 및 통장경력 등) 신설

○ 타 기관 이중수혜자에 대한 차액 지급조항 신설

○ 지급 정지 사유의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총무과 전화 560-4516, 팩스 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2021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에 따라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의무교육(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 및 정액지급 규정 마련

나.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서류 제출 간소화

라. 중복지급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마련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2021년 본예산 편성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등학생”을 “대학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로서”를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학생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 성적이 평균 5등급 이상인 사람이거나 검정고시의 경우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
2.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3. 복학생은 휴학 등으로 인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서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및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조정하여 매 학기 개시(開始)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학생 심사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후 동점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되, 학교 간 및 동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생활이 어려운 통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최근 2년간 수혜이력이 적은 순서

3. 학년이 높은 순서

③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우선 선발될 수 없다. 다만, 장학생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후 순위로 조정하여 선발될 수 있다.

제6조 본문 중 “공납금 전액으로”를 “연간 100만원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공납금”을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본인 또는 통장 및 가족관계인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에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고등학생 중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 대학생 ---------- ---------- ---------- ------.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 ----------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학생으로서---------- ---.
1.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과 성적이 평균 7등급 이내인 재학생. 다만, 평균등급은 각 과목의 석차등급에 단위 수를 곱하여 합산한 후, 해당 과목별 단위 수의 합계로 나눈 등급으로 할 것.	1.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 성적이 평균 5등급 이상인 사람이거나 검정고시의 경우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
2. 신입생은 진단평가 또는 반 편성 고사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90 이내인 사람	2.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신 설>	3. 복학생은 휴학 등으로 인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구 단위(지방자치단체) 이상 대회에서	4. 기능---------- ---------- ----------

3위 내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② 제1항의 조건을 갖춘 통장의 자녀 한 명에 한정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서 학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학비를 면제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 <단서 삭제>
<신 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서 학비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및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수혜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여 매 학기 개시(開始)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①---------- ---------- ---------- --- 평가기준---------- ---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생활이 어려운 통장(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이 낮은 순서)	<삭 제>
2. 장기근속통장	<삭 제>
3.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3년간 수혜이력이 적은 순서	<삭 제>
②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간 및 동별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 심사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후 동점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되, 학교 간 및 동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생활이 어려운 통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최근 2년간 수혜이력이 적은 순서 3. 학년이 높은 순서
<신 설>	③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우선 선발될 수 없다. 다만, 장학생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후 순위로 조정하여 선발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 연간 100만원 이내로---. ---------- 금액---------.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본인 또는 통장 및 가족관계인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 ----------. ②----------.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에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 ①----------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실·국·소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소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소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 - 40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2021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성적 및 통장경력 등) 신설(별표)

○ 장학금 신청 서식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사항 삭제 및 정비(별지 1,2,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총무과 전화 560-4516, 팩스 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제안이유

2021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명하고 구체적인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마련(별표)

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서류 제출 간소화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2021년 본예산 편성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이 장학생을”을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르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일”을 “10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본인에게 송금하거나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를 “장학생 본인 또는”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를 “지급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 총점 배분

계	통장 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100	50	50

□ 통장 경력

근속연수	6년 이상	5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평 점	50	45	40	35	30	25

□ 학업 성적

고등학교 성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검정고시 성적	100	90	85	80	75
대학교성적 (등급)	4.5 (A+)	4.0 (A0)	3.5 (B+)	3.0 (B0)	2.5 (C+)
기능, 체육 특 기 자	국가 대표급, 장관 표창 이상 수상자	시 대표급, 시장 또는 시교육감 표창 수상자	구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지원청장 표창 수상자		
평 점	50	40	30	20	10

주) 1. 통장 경력 산정 기준일 : 해당연도『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洞통보일 현재

2. 학생성적 기준 : 표의 점수 및 등급 이상을 범위로 하며 만점 기준은 4.5로 환산

3. 직전 학기 기준 : 정기학기 기준. 계절학기 등 비정기 학기는 제외.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근속기간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

2.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 학 교 명 :
○ 학 년 : 학년 반(학과)
○ 생년월일 :
○ 성 적 : 성적증명서 첨부

3. 장학생 학업성적

1)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최종 학기 과목 평균 등급 :
2)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검정고시 평균 점수 :
3)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평균 학점 :
4) 복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평균 학점 :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통 장 자 녀 장 학 생 추 천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2.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 학 교 명 :

○ 학 년 : 학년 반(학과)

○ 생년월일 :

3. 확인사항

통장 근속연수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기타장학금 수혜여부 (금액기재)	비고

4. 동장의견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1.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남, 여)

○ 주 소 :

○ 학 교 명 :

○ 학 년 : 학년 반(학과)

○ 생년월일 :

2. 장학금 신청계좌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비 고

3. 제출서류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년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장학생) : 성명 (인)

보호자(통 장) : 성명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3조(추천)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조(선발) ①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르며, ----------. ②---------- 10일 ----------별지 제3호서식----------.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거나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송금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 장학생 본인 또는 ---------- 지급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실·국·소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소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소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 - 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지정기준 등) 개정<일부개정 2020. 11. 9.>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관련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의 일정 지역 소재한 음식점의 수와 상인단체 등록 음식점의 수 30개소를 40개소로, 40개소를 50개소로, 50개소를 60개소로 개정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위생과, 전화 560-4322, 팩스 560-27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지정기준 등) 개정<일부개정 2020.11.9.>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관련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의 일정 지역 소재한 음식점의 수와 상인단체 등록 음식점의 수 30개소를 40개소로, 40개소를 50개소로, 50개소를 60개소로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1년 1월 중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실시 : 2020년 1월 중

(4) 부패영향평가 실시 : 2020년 1월 중

(5) 관련부서 : 환경안전국 위생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제3조제3항 관련)

☐ 항목별 기준

항 목	심 의 기 준		배점
음식점 40개소 이상 집단화	• 예정지구에 소재한 음식점은 40개소 이상 집단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 40개소 이상: 16점 - 50개소 이상: 18점 - 60개소 이상: 20점		20
자치기구 (상인단체) 구성 운영	• 관할 구청 또는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단체 등 자치기구가 있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또는 미등록: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 10점		10
상인단체 등록 음식점 수	• 상인단체 등록 음식점 수는 4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40개소 이상: 6점 - 50개소 이상: 8점 - 60개소 이상: 10점		10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여부	• 예정지구 거리 상인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10
거리의 환경	• 거리는 쾌적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10
거리의 특색	•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된 음식이 있다.		1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 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 및 사회 공헌,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30
	가. 국가 정책에 따른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의 적정성	10	
	나.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자체 계획 수립 여부	10	
	다. 주민 친화 및 사회 공헌 방안의 적정성	10	

비고.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

▢ 심의 기준

❍ 항목별 득점 비율은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심사자의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1 - 57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청라3동 및 오류왕길동 임시청사에서 청사 신축으로 인한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및 청라동 법정동 신설에 따른 청라1, 2동 법정동 기재사항을 변경 반영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소재지) 조문에 따른 [별표]「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구 분	소재지(개정 전)	소재지(개정 후)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연희동)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청라동)**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69(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69**(청라동)**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8번길 5(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89(청라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9(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2(왕길동)**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3,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청라 3동 및 오류왕길동 임시청사에서 청사 신축으로 인한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및 청라동 법정동 신설에 따른 청라1, 2동 법정동 기재사항을 변경 반영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조(소재지) 조문에 따른 [별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

구 분	소재지(개정 전)	소재지(개정 후)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연희동)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청라동)**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69(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69**(청라동)**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8번길 5(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89(청라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9(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2(왕길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개 정 안 : 별지 참조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 중 별표의 관할구역과 같다
연 희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청라동)**	
청라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69**(청라동)**	
청라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89(청라동)**	
가정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1(가정동)**	
가정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번길 10(가정동)**	
가정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신현동)	
석남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석남동)	
석남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 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번길 14(마전동)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2(왕길동)**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0번길 14(마전동)	

〔별표〕

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서 구 청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연 희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청라동)**
청라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69**(청라동)**
청라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89(청라동)**
가정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1(가정동)
가정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번길 10(가정동)
가정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신현동)
석남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석남동)
석남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 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 단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번길 14(마전동)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원 당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당 하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2(왕길동)**
마 전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0번길 14(마전동)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4.1.>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 서구 제2021-59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21. 1. 11. ~ 2021. 1. 25.(15일간)

2. 공 고 내 용

<table>
<tr><td colspan="2">1. 행정처분 제목</td><td colspan="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td></tr>
<tr><td rowspan="2">2. 대상차량</td><td>등록번호</td><td colspan="4" rowspan="2">25다3272 외 13건(붙임 참조)</td></tr>
<tr><td>차명</td></tr>
<tr><td colspan="2">3. 운행정지사유</td><td colspan="4">소유자의 요청 등</td></tr>
<tr><td colspan="2">4. 법적근거</td><td colspan="4">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td></tr>
<tr><td colspan="2" rowspan="2">5. 관할관청</td><td>기관명</td><td>인천광역시 서구청</td><td>담당부서</td><td>차량민원과</td></tr>
<tr><td>주소</td><td colspan="3">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5747, FAX 032-560-2793)</td></tr>
</table>

3. 유 의 사 항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

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5747)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25다3272	스타렉스인터쿨러단축9인오토	김*덕	2020.12.01
2	257라9324	Mercedes-Maybach S500	배*민	2020.12.01
3	96두4078	봉고Ⅲ 1.2톤	강*모	2020.12.04
4	69루3758	베르나(VERNA)	(주)한*린	2020.12.08
5	49부6964	Q5 3.0 TDI Quattro	주식회사 *우	2020.12.08
6	03보4473	NEW그랜저XG	박*형	2020.12.14
7	45보1585	아벨라	장*영	2020.12.14
8	17보7751	QM5	최*학	2020.12.15
9	17두1179	S500 4Matic L	박*일	2020.12.15
10	24보2366	오피러스	원*율	2020.12.16
11	21로1381	싼타페(SANTAFE)	김*기	2020.12.22
12	20러8596	카렌스	윤*무	2020.12.24
13	43러6696	K7 하이브리드	박*성	2020.12.28
14	40마8487	SM3	주식회사 **모터스(상품용)	2020.12.2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21 - 60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중로2-226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금곡동 중로2-226호선 도로개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

3. 공고기간 : 2021.01.11. ~ 2021.01.26.

4. 공시송달대상자 : 아래 붙임 참조

5. 송달할 내용 :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1차)
   ○ 협의방법 : 소유자 개별협의
   ○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기반과 도시관리팀(☎560-4485)
   ○ 구비서류 :
      - 인감증명서 1부(보상금청구 및 수령용)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매수자: 인천광역시 서구)
      - 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 1부
      - 보상금 수령 통장사본(소유자 본인) 1부

- 인감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6. 기타사항

○ 손실보상 협의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협의기간 중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의 명칭 및 공시송달대상

▢ 사 업 명 : 금곡동 중로2-226호선 도로개설공사

▢ 공시송달대상

순번	공시송달 대상자		반송일
	성 명	주 소	
1	임*숙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52번길 **	2020.12.24.